

# 계약학과운영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부산가톨릭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조에 따라 계약으로 설치하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학생정원 및 학위명)**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은 별표와 같다.

②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 2 장 입학·등록

**제4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재교육형 계약학과 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입학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재직 한 자

②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③ 제2항 추천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증명서
2.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3. 원천징수 영수증

4. 산업체 건강보험사업장 적용 통보서

**제5조(학생선발)** 계약학과의 학생선발은 본 대학교 입학모집요강에 따른다. 다만, 대학원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계약학과의 학생은 매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학생 납부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 3 장 학기·수업

**제7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제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계약학과의 수업은 주간이나 야간,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 4 장 교육과정 편성·운영·수료·수업연한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본 대학교의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년 1회 이상 산업체등과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 학생은 교육과정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신청 및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료학점과 수업연한)** 계약학과를 수료하는데 필요한 수료학점과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

**제13조(학위수여)** 계약학과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본 대학교의 학칙 제63조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1조에 의하여 학위수여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 5 장 계약학과 설치·운영

**제14조(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① 계약학과는 대학원에 석사과정·박사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③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계약학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학과는 계약체결일 3주 전까지 계약학과 설치 요구서(별지서식)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 설치·운영은 계약에 의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 체결하는 협약서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⑥ 계약학과 설치·운영 또는 폐지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관계법령이 정한 신고서식에 의거 그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 학과별로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위원수의 1/3이상인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

⑥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관련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
6. 계약학과 학생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7. 계약학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기타 계약학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16조(계약학과 운영경비와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시 상호협약에 따라 정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단체 또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④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⑤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학생 납부금)** ① 계약학과 채용조건형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계약학과 재교육형인 경우에는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

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고 학생의 졸업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징계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협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1/2이상을 이수했거나, 1/2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구조조정 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19조(회계 관리)** 계약학과의 회계 관리는 관리 목적에 따라 교비회계나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제 6 장 기 타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주관기관의 계약학과관련 운영 지침」 등을 준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 경우는 이 개정사항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계약학과의 학과명, 입학정원 및 수여학위명

2024학년도

구 분	학위과정	계열	학과명	정원(명)	학기	학위명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	자연과학	안전보건학과	10	4	이학석사	재교육형
		공 학	에너지융합보안학과	10	4	공학석사	

2023학년도

구 분	학위과정	계열	학과명	정원(명)	학기	학위명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	자연과학	병원경영학과	1	4	보건학석사	재교육형
			안전보건학과	10	4	이학석사	
		공 학	에너지융합보안학과	10	4	공학석사	
	박사	자연과학	병원경영학과	1	4	보건학박사	
		인문사회	경영학과	1	4	경영학박사	

[별지 제1호서식]

## 계 약 학 과 설 치 요 구 서

1. 계약학과의 명칭(기존학과 활용여부) :
2. 과정명(학위명) :
3. 계약기업정보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 4. 학생 정원

구 분	석 사	박 사	비 고
모집인원			

### 5. 관리학과

소 속 학과(전공)	학 과 장		비고
	성명(직)	연락처	

### 6. 수업의 운영(안)

위와 같이 재교육형 계약학과(○○○ 전공)를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부산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 귀하